

## [서식 예]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지방병무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소송수행자 □□□

##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청구취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### 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19○○.
 ○.경 ◎◎대학교 ◆◆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9○○. ○. ○○. △△정
 보주식회사 부설 ▲▲연구소(이하'이 사건 연구소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같



은 해 O. OO. 병역법(이하'법'이라 한다)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전문연구 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.

나. 피고는 원고가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20○○. ○. ○○.까지 지정업체인 이 사건 연구소가 아닌 비지정업체인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의 ○. ▽▽빌딩 내▼▼정보주식회사(이하'▼▼정보'라 한다)에서 3개월 이상의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법 제4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, 제40조 제2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, 20○○. ○. 원고에 대한 전문연구요요원편입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.

### 2. 처분의 위법성

가. 원고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

- (1)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대규모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게임 개발 지원을 위한 통신 에이·피·아이 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,
   ▼▼정보는 위와 같은 연구, 개발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'리뉴얼'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.
- (2) 이 사건 연구소와 ▼▼정보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공동의 출입문을 사용하되 출입문 안쪽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연구소 출입문이 오른쪽에는 ▼▼정보의 출입문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.
  - ▼▼정보는 위 통신 API 기술 등 '리뉴얼' 게임 개발을 위한 제반기술을 20○○. ○○.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이전 받기 시작하였고, 원고는 위 기술의 주된 개발자로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20○○. ○.경까지 ▼ ▼정보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게임개발 팀과 간헐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.
- (3) 위와 같은 기술이전 과정을 거쳐 20○○. ○.경부터 온라인 게임 '리뉴얼'이 상용화되었는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서버에 접속단절, 객체유실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서비스가 자주 중단되자 ▼▼정보는 이 사건 연구소에게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된 연구원인



원고를 정식으로 위 회사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구소장 ☆☆☆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20○○. ○. ○.부터 3주 동안 ▼▼정보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
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○○. ○. ○.경부터 같은 해 ○. ○○. 피고로부터 적발 당할 때까지 ▼▼정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.

### 나. 원고가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

- (1) 병역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'병무청장은 연구기관, 기간산업체 및 방위 산업체'중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선정하 도록 되어 있고,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시행령 제72조 제1항, 제3항에서 정 한 기간산업체 혹은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구기관이 라 함은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를,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 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, 그 외 에너지 산업, 광업, 건설업 분야 기간산업체 는 해당업체를 각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소재지의 이전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하여야 하고,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교육 훈련. 파견. 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 연구기관이나 사업장 등의 소재지 아 닌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는 이를 관할지 방병무청장의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. 이러한 관 련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말하는 지정업체 중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이라 함은 공업분야 산업체 등에서 말하는 공장 또는 사 업장과 마차가지로 장소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만일 전문연구요 원이 당초 지정된 소재지의 연구소, 연구분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편입 당시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'이 된다 할 것입니다.
- (2) 위 가.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, 이 사건 적발당시 지정업체 인 연구소 사무실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장 ☆☆☆의 지시에 따라



비지정업체인 ▼▼정보에 파견되어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였으므로, 이는 법 제40조 제2호에서 정한 사유인 '편입 당시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'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 또는 의무종사기간연장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인바, 원고의 경우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정업체의장의 지시에의하여 부득이 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, 같은 조 제2항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또는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.

### 다.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, 남용 여부

시행령 제91조의 3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'전직,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3월 미만 근무한 때'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가.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○○. ○○.경부터 통신 API 기술이전과 관련▼정보 게임개발 팀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하여 왔으나 비지정업체인 ▼▼정보에 파견되어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○○. ○. ○.경부터로서 이 사건 적발당시까지의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, 피고는 위 기준에따라 원고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 아닌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함이 상당합니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.

#### 3. 결론

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



1.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

1. 갑 제3호증 졸업증명서

# 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 ○○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1 1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<ul> <li>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</li> <li>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</li> </ul>		

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